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시보

제736호 2020. 9. 1.(화)

【공 고】

제2020-1792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20-179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제2020-1797호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

제2020-1813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23

【고 시】

제2020-14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30

제2020-146호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중장1리 마을 만들기 사업) ……………………… 32

제2020-147호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중장2리 마을 만들기 사업) ……………………… 34

제2020-148호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신영2리 마을 만들기 사업) ……………………… 36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2020. 3. 3.)에 따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인용문구 및 관련법상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2020. 3. 3.)

○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및 의견수렴절차 등 명시

나. 주민참여예산기구 기능 겸임 및 교육이수 규정 추가

○ 주민참여예산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서 주민감시활동 지원 추가

○ 위원회 위원선발시 예산학교 교육이수자 우선 선발

다. 간사 규정 명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를 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규정

라. 기타 용어정리, 문구 수정 및 조문정리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예산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28 / FAX : 041-840-2306

4. 참고사항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 · 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읍·면·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세워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공고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예산학교 교육이수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調停),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4.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제20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
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2조(지역위원회 직무 등) 지역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지역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제5장 보칙

제25조(민관협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179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실시에 따른 개방형 직위 지정 자치법규 개정 필요

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향(주35시간)조정 후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별도 관리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과 통합관리

2.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 지정 근거 마련(**제46조제2항 신설 및 별표9 개정)**

- (직위지정) 중학동장
- (지정기준) 주민자치력, 마을자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모신청 대상지로 최종 선정

- (주요업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화합 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열린민원 및 일반행정 업무 총괄 등

○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의 정원으로 통합 관리(**제48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0 삭제)**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9. 1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인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67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 041-840-206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9호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10호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읍장·면장·동장의 직급) (생 략) <신 설>	제46조(읍장·면장·동장의 직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동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직급·직렬별 정원) ①、② (생 략)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 (생 략)	제48조(직급·직렬별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0-1797호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찰청 소관 법령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자치단체 일제 자치법규 검토에 따른 개정요청

나. 일부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른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 청원경찰의 휴가일수를 다루고 있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8조)**

○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휴직에 대한 경력계산 미산입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경력으로 인정되는 병역휴직, 교육, 육아휴직 등과 위반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인 「공무원 보수규정」조항을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9. 1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인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67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 041-840-206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8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1813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전부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 기금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당초)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변경)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으로 구분. 타 회계·기금, 통합기금 간 예수예탁 근거마련

 - (당초) 재정안정화계정만 설치. 일반회계 잉여금, 그 밖에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기금조성

- (변경) 통합계정 추가. 타 회계.기금으로 부터 여유재원 예수 또는 타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데 활용 가능

다.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 활용 경우 구체화

- (당초)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 (변경)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예수·예탁에 따른 이자에 관한 사항 추가 등

3. 재입법예고 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조례로 정해야 하는 조항(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 비율) 누락

- 전년도 말 기준의 적립 총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규정

나. 부칙의 "자금의 이체"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여 승계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9. 1. ~ 2020. 9. 8. (7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공주시장(기획담당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27
- 팩스 : 041-840-370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뺀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의 제1항에 따른 적립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轉出)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공주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공주시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공주시 고시 제2020-144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6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금흥동 418-13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칭	사 업 내 용	비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사업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 조성공사	▪ 부지면적 : 11,963㎡ ▪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조성 - 건축면적 : 1,024.62㎡ - 연 면 적 : 1,262.52㎡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교통과장)

라. 사업기간

(당초) 2019. 08. 20 ~ 2020년 08월 31일
(변경) 2019. 08. 20 ~ 2020년 12월 31일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공주시 금흥동	407	잡	5,941	5,082	공	공주시	
2		418-4	잡	79	79	공	공주시	
3		418-5	잡	53	53	공	공주시	
4		418-7	임	147	147	공	공주시	
5		418-8	임	113	105	공	공주시	
6		418-10	차	156	156	공	공주시	
7		418-13	차	3,548	3,548	공	공주시	
8		540-3	전	917	658	공	공주시	
9		542-33	천	2,403	1,244	국	국토교통부	
10		594-4	도	8,171	867	국	국토교통부	
11		산26-1	임	496	24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계				**22,024**	**11,963**			

공주시 고시 제2020-146호

고 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중장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중장1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1리 일원
   나. 사업개요
   - 지역경관개선 : 황매화나무 식재, 쉼터 및 포토존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453백만원 (국비 35, 시비 418)

5.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읍면	리				
황매화 식재	계룡면	중장리	30-2	전	982	대한불교조계종갑사
	계룡면	중장리	31-5	전	166	대한불교조계종갑사
	계룡면	중장리	31-3	답	195	대한불교조계종갑사
	계룡면	중장리	30-4	임	278	대한불교조계종갑사
	소계				1,621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041-840-8248)

공주시 고시 제2020-147호

고　　　　　　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중장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중장2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2리 일원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회관, 교통안전환경개선
- 지역경관개선 : 논두렁 국화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500백만원 (국비 35, 시비 465)

5.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읍면	리				
다목적회관	계룡면	중장리	413	대	866	중장2구새마을회
	계룡면	중장리	410-8	대	190	중장2구새마을회
	소계				1,056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041-840-8248)

공주시 고시 제2020-148호

고 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영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신영2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신영2리 일원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고령자공동시설, 쉼터 및 포토존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500백만원 (국비 35, 시비 465)

5.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읍면	리				
다목적회관	이인면	신영리	221-1	전	1,342	공주시
	소계				1,342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041-840-8248)